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17가합12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225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17가합12847 판결

전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덕

피고1. 망 F의 소송수계인

가. G

나. H

다. I

2. H

3. I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진

4. J

5. K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조일원

변론 종결 2021. 7. 7.

판결 선고 2021. 9.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지분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제1항의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피고 G는 원고 A에게 625,288원, 원고 B에게 7,072,067원, 원고 C에게 7,312,482원, 원고 D, E에게 각 1,329,5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21. 9. 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H, I은 원고 A에게 각 416,858원, 원고 B에게 각 4,714,711원, 원고 C에게 각 4,874,988원, 원고 D, E에게 각 886,3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21. 9. 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 J은 원고 A에게 2,744,283원, 원고 B에게 31,038,092원, 원고 C에게 40,276,723원, 원고 D, E에게 각 7,323,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21. 9. 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라. 피고 K은 원고 A에게 1,896,745원, 원고 B에게 21,452,352원, 원고 C에게 27,992,144원, 원고 D, E에게 각 5,089,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21. 9. 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제1항의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H은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381/1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D, 원고 E에게 각 978/1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I은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1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D, 원고 E에게 각 909/1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K, J은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046/1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D, 원고 E에게 각 735/1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 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1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18,474/100,000, 원고 D, E이 각 3,359/100,000, 피고 G가 7,918/100,000, 피고 H, I이 각 5,278/100,000, 피고 K, J이 각 3,815/100,000 임을 확인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별지 1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23,374/100,000, 원고 D, E이 각 4,249/100,000, 피고 G가 2,790/100,000, 피고 H, I이 각 1,859/100,000 임을 확인한다. 피고 G는 원고 A, B, C에게 각 7,383,501원, 원고 D, E에게 각 1,342,454원, 피고 H은 원고 A, B, C에게 각 32,340,555원, 원고 D, E에게 각 5,880,100원, 피고

I은 원고 A, B, C에게 각 32,340,555원, 원고 D, E에게 각 5,880,100원, 피고 K은 원고 A, B, C에게 각 33,476,092원, 원고 D, E에게 각 6,086,562원, 피고 J은 원고 A, B, C에게 각 49,169,992원, 원고 D, E에게 각 8,939,9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

별지 1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1/4, 원고 D, E이 각 2/44 임을 확인한다. 피고 G는 원고 A, B, C에게 각 30,884,901원, 원고 D, E에게 각 5,615,436원, 피고 H은 원고 A, B, C에게 각 20,589,934원, 원고 D, E에게 각 3,743,624원, 피고 I은 원고 A, B, C에게 각 20,589,934원, 원고 D, E에게 각 3,743,624원, 피고 K은 원고 A, B, C에게 각 33,476,092원, 원고 D, E에게 각 6,086,562원, 피고 J은 원고 A, B, C에게 각 49,169,992원, 원고 D, E에게 각 8,939,9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3 예비적 청구

별지 1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24,694/100,000, 원고 D, E이 각 4,489/100,000, 피고 G가 526/100,000, 피고 H, I이 각 351/100,000 임을 확인한다. 피고 G는 원고 A, B, C에게 각 7,312,482원, 원고 D, E에게 각 1,329,542원, 피고 H은 원고 A, B, C에게 각 4,874,988원, 원고 D, E에게 각 886,361원, 피고 I은 원고 A, B, C에게 각 4,874,988원, 원고 D, E에게 각 886,361원, 피고 K은 원고 A, B, C에게 각 27,992,144원, 원고 D, E에게 각 5,089,480원, 피고 J은 원고 A, B, C에게 각 40,276,723원, 원고 D, E에게 각 7,323,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가족관계

- 1)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M와 혼인하여 망 N, 망 F, 원고 A, 원고 B, 원고 C, 망 O을 자녀로 두었다.
- 2) 망 N은 P와 혼인하여 원고 D, 원고 E 등을 자녀로 두었다.
- 3) 망 F은 소송수계인 G(이하 '피고 G'라 한다)와 혼인하여 소송수계인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소송수계인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을 자녀로 두었다.
- 4) 망 O은 Q와 혼인하여 피고 K, J을 자녀로 두었다.
- 5) 망 O은 1989. 3. 9., 망 M는 2004. 2. 11., 망 N은 2013. 12. 31., 망인은 2016. 9. 1., 망 F은 2019. 10. 17.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재산 증여

- 1) 피고 J, K은 2006. 5. 3. 별지 1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을 붙여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2006. 5. 1.자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망 F, 피고 H, I, J, K은 2012. 7. 23.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2. 7. 4.자 증여(이하 '이 사건 2012. 7. 4.자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 J은 2012. 5. 16.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2012. 5. 11.자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망인은 2006. 12.경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9,000,000원, 망 F에게 8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6 내지 9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예금 45,592,725원(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 부동산	54,418,000원	이 사건 6 부동산	228,888,000원
이 사건 2 부동산	14,812,000원	이 사건 7 부동산	127,097,000원
이 사건 3 부동산	2,012,160,000원	이 사건 8 부동산	398,426,000원
이 사건 4 부동산	211,587,100원	이 사건 9 부동산	1,782,000원
이 사건 5 부동산	26,686,600원	이 사건 10 부동산	167,776,000원
		이 사건 11 부동산	170,880,000원

마. 망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1) 피고 G, H, I은 2020. 4. 20.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망 F의 지분을 피고 H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망 F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예금채권과 망 F의 채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2) 피고 H은 2020. 4. 28.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망 F 소유인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17.자 상속재산합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R, S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안양세무서, 인천세무서, 화성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상속지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상속지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반영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6 내지 9 부동산과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겠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일 그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상속지분확인청구 부분 제외, 이하 같다)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을 망 F, 피고 H, I, J, K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할 당시 망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되, 다만 피고 J, K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10, 1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증여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2, 9, 갑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에 대한 T병원의 2011. 10. 14.자 의무기록에는 "최근 일 기억 못하신다. 따님 집에 오신지 1주일가량 되었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등 잘 모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T병원은 2011. 11. 10. 망인을 상대로 노인신경심리평가를 실시하여 '언어적 기억력은 정보 등록과정에서부터 현저한 장애가 시사되며, 시각적 기억력 또한 정상범주 이하로 저하되어 있어 보임. 주의집중능력 중 지속적 주의집중능력이 보통수준에 매우 못 미치고 있고, 언어능력중 confrontational naming ability가 정상범주 이하로 저하되어 있음. 시각적 지각, 분석 및 구성능력과 전두엽/집행기능이 정상범주 이하로 매우 저하되어 있음. 정서적으로 중증도 우울감이 시사됨. 이상의 신경심리학적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bilateral temporal frontal lobes의 기능장애와 bilateral parietal lobes의 기능저하가 시사됨'으로 판정한 사실, ③ 망인은 2012. 8. 20.

U병원에서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 ④ 피고 J은 2015. 10. 20.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망인에게 치매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망인이 U병원에서 GDS 검사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인 점, ㉡ 초기 치매 상태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에 관한 주요한 정보는 간직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이나 배우자, 자녀의 이름도 알고 있으며,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데, 이와 같은 정도로는 망인이 의사무능력에 준하는 중증의 인지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망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유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4.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H, I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2012. 7. 4.자 증여는 증여자인 망인과 수증자인 피고 H, I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피고 H, I이 증여받은 지분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2012. 7. 4.자 증여로 피고 H, I이 취득한 재산은 각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1/5 지분으로 그 가액이 각 416,278,000원[= (54,418,000원 + 14,812,000원 + 2,012,160,000원) × 1/5] 상당인 반면, 망인의 남은 재산 가액은 적어도 이 사건 6 내지 9 부동산 가액인 756,193,000원(= 228,888,000원 + 127,097,000원 + 398,426,000원 + 1,782,000원) 상당으로, 위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H 쌍방 및 망인과 피고 I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 H, I이 각 증여받은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1/5 지분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 H, I이 증여받은 위 1/5 지분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2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5.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 H, I에게 증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망 F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망 F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2012. 7. 4.자 증여 당시 망 F은 화성시 V에, 피고 H은 서울 강서구에, 피고 I은 수원시 장안구에 각 주소지를 두었던 점, ② 위 증여 당시 피고 H은 35세, 피고 I은 31세이었던 점, ③ 피고 H, I과 별도로 망 F도 함께 증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H, I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망 F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 H, I에게 증여된 것을 망 F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 H, I에 대한 증여를 망 F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3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6. 제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망 F, 피고 J, K에게 이 사건 1 내지 5, 10, 11 부동산을 생전 증여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관하여 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적극적 상속재산은 이 사건 6 내지 9 부동산과 이 사건 예금채권이고, 그 가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6 부동산	228,888,000원
이 사건 7 부동산	127,097,000원
이 사건 8 부동산	398,426,000원
이 사건 9 부동산	1,782,000원
이 사건 예금채권	45,592,725원
합계	801,785,725원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액은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3/5 지분(망 F과 피고 J, K이 증여받은 각 1/5 지분), 이 사건 4, 5, 10, 11 부동산과 원고 A, B와 망 F이 2006. 12.경 증여받은 현금이다. 그런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환산되어야 하고,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GDP 디플레이터 수치	82.702	100.000	101.986
--------------	--------	---------	---------

원고 A, B와 망 F이 증여받은 현금을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가액은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2006년경	80,000,000원	101.986	82.702	98,653,962원
원고 B	2006년경	29,000,000원	101.986	82.702	35,762,061원
망 F	2006년경	80,000,000원	101.986	82.702	98,653,962원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 부동산	54,418,000원	32,650,800원
이 사건 2 부동산	14,812,000원	8,887,200원
이 사건 3 부동산	2,012,160,000원	1,207,296,000원
이 사건 4 부동산	211,587,100원	211,587,100원
이 사건 5 부동산	26,686,600원	26,686,600원
이 사건 10 부동산	167,776,000원	167,776,000원
이 사건 11 부동산	170,880,000원	170,880,000원
원고 A에 대한 환산증여가액		98,653,962원
원고 B에 대한 환산증여가액		35,762,061원
망 F에 대한 환산증여가액		98,653,962원
합계		2,058,833,685원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2,860,619,410원(= 801,785,725원 + 2,058,833,685원)이다.

3) 망인의 상속인들 유류분액2)

원고 A	1/6	1/12	238,384,950원
원고 B	1/6	1/12	238,384,950원
원고 C	1/6	1/12	238,384,950원
망 N	소외 P	1/22	1/44
원고 D	1/33	1/66	43,342,718원
원고 E	1/33	1/66	43,342,718원
소외 W	1/33	1/66	43,342,718원
소외 X	1/33	1/66	43,342,718원

원고 A	1/6	1/12	238,384,950원
망 F	1/6	1/12	238,384,950원
망 O	피고 J	1/12	1/24
피고 K	1/12	1/24	119,192,475원

4)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C) ○ 원고 A: 98,653,962원

○ 원고 B: 35,762,061원

○ 망 F: 514,931,962원(= 환산수증가액 98,653,962원 +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1/5 지분 가액 416,278,000원)

○ 피고 J: 823,879,700원[=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1/5 지분 가액 416,278,000원 + 이 사건 4 부동산 가액 211,587,100원 + 이 사건 5 부동산 가액 26,686,600원 + 이 사건 10 내지 11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 169,328,000원{= (167,776,000원 + 170,880,000원) × 1/2}]

○ 피고 K: 585,606,000원(=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중 1/5 지분 가액 416,278,000원 + 이 사건 10 내지 11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 169,328,000원)

한편, ① 피고 G, H, I은, 망인이 2006년경 증여 외에도 망 N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0원 등을 증여하였고, 2015년경 원고들 등에게 각 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 K, J은, 망인이 2012. 2.경 원고 A, B와 망 N, 망 F에게 각 36,000,000원, 원고 C에게 35,900,000원 등을 증여하였고, 2013. 7. 9.경 망 F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2016. 1. 26.경 원고 D, A, B, C와 망 N, 망 F 등에게 각 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③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 B에게 '수원시 장안구 Y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이나 올라 제3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순상속액(D) ○ 원고 A, B, C: 각 133,630,954원(= 801,785,725원 × 1/6)

○ P: 36,444,805원(= 801,785,725원 × 1/22)

○ 원고 D, E, 소외 W, X: 각 24,296,537원(= 801,785,725원 × 1/33)

○ 망 F: 133,630,954원(= 810,785,725원 × 1/6)

○ 피고 J, K: 각 66,815,477원(= 801,785,725원 × 1/12)

6) 유류분 부족액

원고 A	238,384,950원	98,653,962원	133,630,954원	6,100,034원
원고 B	238,384,950원	35,762,061원	133,630,954원	68,991,935원
원고 C	238,384,950원		133,630,954원	104,753,996원
소외 P	65,014,077원		36,444,805원	
원고 D	43,342,718원		24,296,537원	19,046,181원
원고 E	43,342,718원		24,296,537원	19,046,181원
소외 W	43,342,718원		24,296,537원	
소외 X	43,342,718원		24,296,537원	
망 F	238,384,950원	514,931,962원	133,630,954원	-410,177,966원
피고 J	119,192,475원	823,879,700원	66,815,477원	-771,502,702원
피고 K	119,192,475원	585,606,000원	66,815,477원	-533,229,002원

7) 유류분 반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망 F, 피고 J, K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비율(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 버림)과

그에 따른 반환의무액은 아래와 표와 같다.

원고 A	6,100,034원	망 F	0.239184) 410,177,966원 / (410,177,966원 + 771,502,702원 + 533,229,002원)	1,459,006원
피고 J	0.449885) 771,502,702원 / (410,177,966원 + 771,502,702원 + 533,229,002원)	2,744,283원	2,744,283원	
피고 K	0.310946) 533,229,002원 / (410,177,966원 +	1,896,745원	1,896,745원	

원고 A	6,100,034원	망 F	0.239184) 410,177,966원 / (410,177,966원 + 771,502,702원 + 533,229,002원)	1,459,006원	
	771,502,702원 + 533,229,002원)				
원고 B	68,991,935원	망 F	0.23918	16,501,491원	
피고 J	0.44988	31,038,092원	31,038,092원		
피고 K	0.31094	21,452,352원	21,452,352원		
원고 C	104,753,996원	망 F	0.23918	25,055,061원	
피고 J	0.44988	47,126,728원	40,276,723원		
피고 K	0.31094	32,572,207원	27,992,144원		
원고 D	19,046,181원	망 F	0.23918	4,555,466원	
피고 J	0.44988	8,568,496원	7,323,040원		
피고 K	0.31094	5,922,219원	5,089,480원		
원고 E	19,046,181원	망 F	0.23918	4,555,466원	
피고 J	0.44988	8,568,496원	7,323,040원		
피고 K	0.31094	5,922,219원	5,089,480원		

8) 망 F의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채무 상속 망 F의 상속인들로 피고 G, H, I이 있고, 피고 G의 상속비율은 3/7, 피고 H, I의 상속비율은 각 2/7이다. 피고 G, H, I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환의무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1,459,006원	피고 G	3/7	625,288원	625,288원
피고 H	2/7	416,858원	416,858원		
피고 I	2/7	416,858원	416,858원		
원고 B	16,501,491원	피고 G	3/7	7,072,067원	7,072,067원
피고 H	2/7	4,714,711원	4,714,711원		

원고 A	1,459,006원	피고 G	3/7	625,288원	625,288원
피고 I	2/7	4,714,711원	4,714,711원		
원고 C	25,055,061원	피고 G	3/7	10,737,883원	7,312,482원
피고 H	2/7	7,158,588원	4,874,988원		
피고 I	2/7	7,158,588원	4,874,988원		
원고 D	4,555,466원	피고 G	3/7	1,952,342원	1,329,542원
피고 H	2/7	1,301,561원	886,361원		
피고 I	2/7	1,301,561원	886,361원		
원고 E	4,555,466원	피고 G	3/7	1,925,342원	1,329,542원
피고 H	2/7	1,301,561원	886,361원		
피고 I	2/7	1,301,561원	886,361원		

다. 소결론

결국 피고 G, H, I은 위 나.의 8)항 기재 표 반환청구자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0. 7.부터, 원고 A, B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J, K은 위 나.의 7)항 기재 표 반환청구자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9. 29.부터, 원고 A, B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상속지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3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3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훈

판사이용욱

판사김동현

별지

- 1)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의 경우 망 F과 피고 J, K이 각 증여받은 지분의 합계인 3/5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감정평가액의 60%)이다.
- 2) 망 F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무를 계산하고 이후 망 F의 채무를 피고 G, H, I이 상속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3) 원고 C, D, E의 경우 반환의무액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이다.
- 4) 410,177,966원 / (410,177,966원 + 771,502,702원 + 533,229,002원)
- 5) 771,502,702원 / (410,177,966원 + 771,502,702원 + 533,229,002원)
- 6) 533,229,002원 / (410,177,966원 + 771,502,702원 + 533,229,002원)
- 7) 원고 C, D, E의 경우 반환의무액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이다.